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4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임오경의원)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
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
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
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제43조(감독) ① -----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대학스포츠협의회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대학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대학운동부 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기관으로서 대학스포츠에 대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부재하여 대학스포츠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체육 분야 유관기관으로 관리 중인 기관 중 유일하게 법령상 설립 근거가 부재한 기관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 분야 유관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 성격	설립 근거법
스포츠윤리센터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대한체육회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태권도진흥재단	기타 공공기관	「태권도법」 제20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공직유관단체	부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대학스포츠가 국민체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학스포츠 정책 사업을 수행하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대학스포츠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학스포츠분야에 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 할 경우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사단법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
- 현재 법정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경우도 그 근거법에 교육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스포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스포츠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한바,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안정적·체계적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는 있으나,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도 한국대학스포츠협

의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경우, 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조 등 변경 필요 시 정책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②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부담으로 연결되며, ③ 대학스포츠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외 다른 분야에서의 특수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바, 현재 체계와 같이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